

1. 개정이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녹색매장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기준을 합리화함으로 녹색매장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로 대체
- 매장의 전력, 수도, 에너지 사용량 기재란 삭제
- 기존 고시*를 통해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던 ‘녹색매장 운영 계획’ 내용을 신청서에 추가**하여 서식을 통합함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9호)

** 녹색제품 판매 및 홍보 현황, 녹색제품 사용, 임직원 녹색소비 교육 여부 등 녹색제품과 관련된 기재란 추가, 포장재 저감, 친환경배송 특화 매장 선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신규 []			재지정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전화번호		
	신청 매장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매장 개점 연도			매장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매장 연간 총매출	전년도 (억원), 해당 연도(예상)		(억원)		
녹색제품 매출	전년도 (억원), 해당 연도(예상)		(억원)		
녹색제품 판매현황	SKU		녹색소비 홍보현황	[] 매장 유도안내판	
	[] 세제(세탁, 주방, 섬유유연제 등) [] 위생용품(비누, 샴푸 등) [] 주방용품(식기, 주걱, 호일 등) [] 생활용품(화장지, 롤백 등) [] 기타() * 해당 사항 체크(√)			[] 인증표시물(POP) [] 상품표찰(Show card) [] 홍보 포스터 [] 특정 제품군 홍보관 설치 [] 기타() * 해당 사항 체크(√)	
판매장소 설치형태	품목군 별 []독립매대, []기존매대 활용		판매 매대 면적	m²	
녹색제품 사용현황	SKU		임직원 녹색소비 교육	수료[] 미수료[]	
특화된 녹색매장(선택)	[] 포장재 최소화, 친환경 배송, 녹색소비 인센티브 등 * 선택시 체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녹색매장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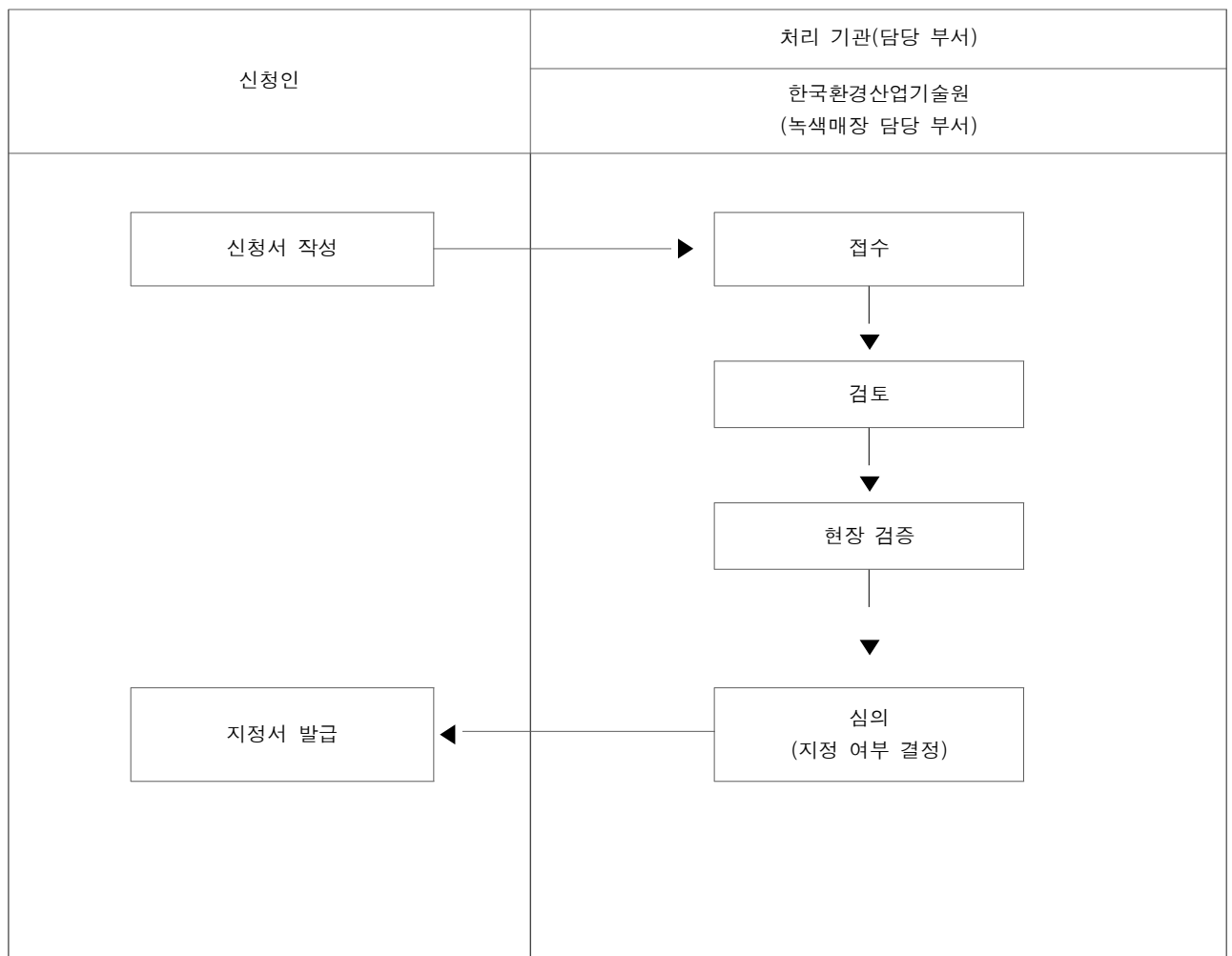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리스트, 신청연도 녹색제품 판매현황 리스트, 녹색제품 판매 매대·홍보물 전경 사진, 신청연도 녹색제품 사용현황 리스트, 임직원 녹색 소비 교육 증빙자료, 특화된 녹색매장 운영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